〈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 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183	
TOZ Study Center	최초 등록일	2013. 03. 06.	www.tozstudy.kr
Centér	최종 등록일		www.to2Study.ki

토즈 스터디센터 정보공개서

[㈜티스터디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터디컴퍼니

대 표 번 호 (02-588-2955	팩 스 번	호	070-8244-2978
가 맹 영 업 팀 (02-588-2955	주	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 길 57, D동 101 호(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내·외국 기업 여부
- 4. 인수·합병 여부
-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 2. 가맹사업의 연혁
- 3. 가맹사업의 업종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 9.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 10. 가맹금 예치기관
- 11.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영업지역
- 5. 가맹본부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기간, 갱신 및 종료
- 7. 계약의 해지
-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10.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제공 등 내역

W.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프로그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 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티스터디컴퍼니의 "토즈 스터디센터"]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사항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둥기일	2021 년 09 월 02 일	사업자등록일	2021 년 09월 02일
법인등록번호	110111-8013156	사업자등록번호	837-87-02508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	호/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가맹본부	㈜티스	:터디컴퍼니	양강민	02-588-2955
	양강민(대표이사)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이동준(사내이사)		서우 서호그	중러근 70 기 57 D.도
(임원)	박선욱(사내이사)	토즈 스터디센터 외 2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 길 57, D 동 101 호(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이지혜(감사)		101 오(시소 [·]	하, 시조느냐컬디스)

☞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분할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분할	기업명	영업표지	일자	주소	대표자
	1 1 1 0	0 11 1	– 1	, —	,,,

여부					
다른 기업에서 분할됨	㈜피투피시스템즈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토즈스터디카페	2021.09.0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0- 1(증거운빌딩 9층)	김윤환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토즈 스터디센터의 명칭·상호·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이미지
토즈 스터디센터	토즈 스터디센터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해당사항없음	TOZ StudyCenter TOZ Study Center 토즈스터디센터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호협의 하여 비용의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년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및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934,657	572,562	362,094	479,093	-119,283	-3,327,153
2022 년	120,908	357,098	-236,190	789,678	19,545	-598,284
2023 년	97,994	415,010	-317,015	355,354	148,401	-80,825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브랜드별 분리가 어려워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표지 합계액은 가.와 같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개인별 사업경력 직위			
####	78 78	411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양강민	대표이사	2022.02~현재	㈜티스터디컴퍼니	업무총괄
가맹사업	이동준	이사	2022.02~현재	㈜티스터디컴퍼니	경영전반
관련 임원	박선욱	이사	2022.02~현재	㈜티스터디컴퍼니	경영전반
	이지혜	감사	2022.02~현재	㈜티스터디컴퍼니	감사

8.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Т (Д) Д	상근	비상근	121(0)
2023 년 12 월 31 일	3	1	-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영업표지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 용
기메비비	(T) el el al	토즈 스터디랩(20190310)	2019.04.08~현재	독서실 운영업 프랜차이즈
7778七十	㈜티스터디컴퍼니	토즈스터디카페(20200321)	2020.03.26~현재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1) 귀하가 당사의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권리 범위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사용기간)
상표	TOZ	가맹점 상호 및 매장내 상표사용	2013.02.21	4102524310000	㈜피투피시 스템즈	2023.02.21 (2023.02.21)
상표	TOZ StudyCenter	가맹점 상호 및 매장내 상표사용	2023.09.08	4020803250000	㈜피투피시 스템즈	2033.09.08 (2033.09.0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목	저작물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저작자/디자인권 자
	토즈 스터디센터 독서실 (미금센터)	도형저작물 ->설계도	제 C-2012-027593	2012.12.20	㈜토즈 스터디센터
저작권	토즈 스터디센터 독서실 (수지센터)	도형저작물 ->설계도	제 C-2012-027595	2012.12.20	㈜토즈 스터디센터
, , ⊆	토즈 스터디센터 독서실 (등촌센터)	도형저작물 ->설계도	제 C-2012-027594	2012.12.20	㈜토즈 스터디센터
	토즈 스터디센터 좌석예약시스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제 C-2015-014247	2015.06.13	(주)피투피시스템 즈
디자인권	독서실용 테이블	입체디자인도면	제 30-0737721	2014.04.02	㈜토즈 스터디센터

[※] 상기 표 중 저작권은 2012 년에 공표되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그 보호기간은 2013 년부터 2063 년까지입니다.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토즈 스터디센터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2년 1월 5일입니다.

당사의 토즈 스터디센터의 직영점 오픈일은 2010년 10월 1일입니다.

※ 상기 가맹사업 시작일과 직영점 오픈일은 흡수합병 된 ㈜토즈 스터디센터 당시의 내용입니다.

2. 토즈 스터디센터의 연혁

토즈 스터디센터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주)토즈스터디센터	토즈 스터디센터	김윤환	2012.01.05 ~2014.08.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00-10 목동로데오빌딩 4층	-
(주)토즈스터디센터	토즈 스터디센터	김윤환	2014.08.20 ~2014.11.0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5 길 15,2 층 (동교동,성도빌딩)	주소 변경

[※] 상기 표 중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9.04.02 일입니다.

㈜피투피시스템즈	토즈 스터디센터	김윤환	2014.11.03 ~2021.09.01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0-1 (창천동,즐거운빌딩 9 층)	합병
㈜티스터디컴퍼니	토즈 스터디센터	김윤환	2021.09.02 ~2022.02.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6, 4층 403호 (도화동)	분할
㈜티스터디컴퍼니	토즈 스터디센터	양강민	2022.02. ~ 2023.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 길 6, 5F	주소 대표 자
㈜티스터디컴퍼니	토즈 스터디랩	양강민	2023.01 ~ 현재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 길 57, D동 101 호(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	주소 변경

3. 토즈 스터디센터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토즈 스터디센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도스 스테니센터	기타교육	독서실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토즈 스터디센터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토즈 스터디센터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	1년 12월 3	1일	2022	2년 12월 3	1일	202	3년 12월 (31일
시크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17	217	-	123	123	_	80	80	-
서울	72	72	-	45	45	_	28	28	-
부산	12	12	-	8	8	_	6	6	-
대구	9	9	-	2	2	_	-	-	-
인천	13	13	-	5	5	_	2	2	-
광주	2	2	-	_	_	_	-	-	-
대전	4	4	-	2	2	_	2	2	-
울산	1	1	-	1	1	_	1	1	-
세종	_	_	-	_	_	_	-	-	-
경기	71	71	-	40	40	_	29	29	-
강원	4	4	-	3	3	_	2	2	-
충북	5	5	-	1	1	_	-	-	-
충남	4	4	-	_	_	_	-	-	-
전북	2	2	-	1	1	_	1	1	-
전남	1	1	-	1	1	_	1	1	-
경북	1	1	-	1	1	_	-	-	-
경남	10	10	-	7	7	_	4	4	-
제주	6	6	-	6	6	_	4	4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토즈 스터디센터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 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282	0	0	65	17	217
2022 년	217	0	0	94	17	123
2023 년	123	0	0	43	3	80

6. 토즈 스터디센터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na cha	A) 7	ماماس-ا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가맹점 및 2		점 수
상호 / 이름	업종	영업표지	등록번호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티스터디컴퍼니	독서실 운영업	토즈 스터디센터	20130100183	217/0	123/0	80/0
㈜티스터디컴퍼니	독서실 운영업	토즈 스터디랩	20190310	9/0	5/0	3/0
㈜티스터디컴퍼니	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카페	20200321	14/0	13/0	13/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월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000 14 H		연간	매출액(단위: 침	천원,VAT ㅁ]포함)		산출	
지역	2023 년 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매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773省十	평균매출액	3.3m²당	상한	3.3m²당	하한	3.3m²당	가맹점 수	
전체	80	86,114	1,059	264,444	3,157	1,474	24	78	
서울	28	118,871	1,447	264,444	3,157	7,103	106	28	
부산	6	88,124	1,038	129,867	1,738	46,201	423	6	
대구	-	-	-	-	-	-	-	5곳미만	
인천	2	-	-	-	-	-	-	5곳미만	
광주	-	-	-	-	-	-	-	5곳미만	
대전	2	-	-	-	-	-	-	5곳미만	
울산	1	-	-	-	-	-	-	5곳미만	
세종	-	-	-	-	-	-	-	5곳미만	
경기	29	77,621	948	181,775	2,557	13,070	168	28	
강원	2	-	-	-	-	-	-	5곳미만	
충북	-	-	-	-	-	-	-	5곳미만	
충남	-	-	-	-	-	-	-	5곳미만	
전북	1	-	-	-	-	-	-	5곳미만	
전남	1	-	-	-	-	-	-	5곳미만	
경북	-	-	-	-	-	-	-	5곳미만	

75	형남	4	-	-	-	-	-	-	5곳미만
저	ll주	4	-	-	-	-	-	-	5곳미만

※ <u>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운영시스템(TOZMATE)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u>

※ 당사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2개 가맹점은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매출 산정이 어려워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0 개가 아닌 78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 사업자 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지역 마케팅 활동, 지점 청결 관리, 서비스 매뉴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토즈 스터디센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80개	2,468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당사의 전 사업연도 광고 및 판촉비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가맹사업(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토즈스터디카페)과 관련된 연간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 (단위:천원)			
十 包	भा ठ	기신 못 될사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2023.1~2023.11.	5,451천원	-		
판촉	(비공개)					
진국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티스터디컴퍼니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당사는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또는 보증보험 가입)	확정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또는 보증보험 가입)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가.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신규 가맹점 최초 가입비	11,0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지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입(오픈)시 소멸되는 비용
교육비	입문교육(용역료)	3,300,000	교육개시 후 반환 불가	소멸성비용

나.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5,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미납 채무가
이행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	보증금을
보증금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초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합계	19,300,000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3,300,000
계약보증금	5,000,000(부가세 없음)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198m²기준/단위:원/VAT 별도)

죠. ㅁ	지급	금액		기그기원	비형고기
품목	대상	198m²기준	평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인테리어 공사		91,200,000	1,520,000		
네트워크 공사		250,000	5,556		 설치 전 소요비용
91-71-4 0/1		~400,000	~8,889		제외 후 반환
출입 및 보안	~l . 1	300,000	6,667		기기가 한번
	정보 공개서	~400,000	~8,889		
가구	V - 1 의	45,000,000	750,000		
운영시스템	거래	7,000,000	116,667	가맹계약시	
IT 하드웨어	상대방	4,200,000	70,000	개별계약	
IT 소프트웨어		300,000	5,000		미공급시 소요비용
초도물품		2,800,000	46,667		제외 후 반환
아트웍		1,000,000	16,667		
냉난방		13,200,000	220,000		
간판		실비정산	-		
हो. चो		165,250,000	2,757,224		
합계		~165,500,000	~2,762,779		
가맹점	사업자 직접	니 리시공 및 물품구입시	감리비: 3.3m² 당	700,000(VAT	별도)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위 표의 3.3m² 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용도변경,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 사업 모델 유형의 종류는 Model A, Model B, Model C 로 구분되며 상기 제시된 투자금 내역의 경우, Model C 에 해당되며 다른 모델을 선택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품목의 경우, 필수 항목이라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및 제품모델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도물품 일부, 아트웍 일부, IT 기기 일부 등
- ⑥ 투자금 내역서는 별도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종료 후 설계도면과 함께 자산대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다목 예치가맹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다목 예치가맹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다목 예치가맹금액의 50%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행정구역, 시장의 특성, 주요시설, 업종
		특성, 건물환경(소음, 시설노후문제)에 대해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
		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 또는 제안을
		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3)	이외 입점 이후 발생하는 소음 또는 영업방해로 인해 건물주 및 동일 건
		물내 타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독서실 업종의 인·허가 관련 규정에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5)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개점전교육 :필수 수료	특별한 기준 없음 (단, 독서실 인허가를 위해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경력이 없는 자)
종업원	개점전 및 운영 중 : 필수 수료	직접 채용 원칙이며, 지원자 면접 테스트 통과 필수, (단 가맹사업자의 추천인이 있을 경우 별도 진행 실시)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위 필요 설비 외 건축물 용도변경, 외부공용부인테리어, 전기증설, 화장실 공사, 창호교체, 철거, 방음 및 단열, 소방시설 등 별도 공사 항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 협력업체는 본사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님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기그리기
구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지급시기			
계약금	50,000,000 원 (예치가맹금 포함)	8,300,000 원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전체)	가맹계약 체결 시			
중도금	총 대금의 50%	-	착공일			
잔금	잔여대금	-	가오픈일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가 가능하나 공사기간 및 점포 오픈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가맹 본부	총 매출액의 5.5% 또는 정액 220,000 원(VAT 포함)	매월 10 일	후불로 반환 안됨
	매니저 교육코스	가맹 본부	실비		해당사항 없음
개점 이후	점주특강	가맹 본부	실비		해당사항 없음
교육비	동영상교육	가맹 본부	무료		해당사항 없음
	양도양수센터 교육	가맹 본부	3,300,000 원		해당사항 없음
판촉 분담비	판촉(공동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가맹사업자의 부담액: 가맹사업자 지분율*(광고비의 50%/가맹점사업자 수)]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해당 없음		
점포 환경 개선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의	가맹 본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VII-1 참조
비용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_ ,	점포의 확성 또는 이신들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 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통신 월 사용료	무선 인터넷 등	개별업체 (점주자율)	업체와 별도 계약	별도진행	별도진행

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점주자율)	업체와 별도 진행	별도진행	별도진행
----	-----------------	---------------	-----------	------	------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2023 년도에는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시설환경,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운영시스템(TOZMATE),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정확한 가맹점 매출분석을 위해 지출 내역을 성실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영업과 관련된 각종 현황(회계자료, 시설상태, 재고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계약 시점의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존 가맹계약의 계약 조건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 중의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5,000,000원/VAT없음) 및 교육비(3,000,000원/VAT별도) 등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투자형 가맹사업자의 경우,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양도 양수 기준에 의거하여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 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 얻어 /	사용하던	상호, 🤇	간판, 기	기타 포	E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18	3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품목 중 권유 품목 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 사정에 의해 협력업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3년 공급품목이 없어서 이에 대한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토즈 스터디센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2023 년도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 년도에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도에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토즈 스터디센터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상품·용역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에 상품·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 및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월 70,000 원 ~ 178,000 원(지역별 교육지청의 권고 가격)에 준하여 가격을 책정합니다(멤버십 라운지 이용요금 별도).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ठ इस मृठ मृत	가맹본부	계열회사		
독서실 운영업	토즈 스터디랩 토즈 스터디센터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다년간의 가맹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상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정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점포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 내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중심상권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및 주요 동선을 참고하여 별도 기준 설정 (특정 지명 건물, 사거리 등)	지도로 표시하며 해당 표시 영업지역을
투수상권	거리제한 없음	최종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기 경입시역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비고	☞ 영업지역 변경(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내용으로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 통지 이후 15일 이내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 검토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한 경우 → 영업지역 재조정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이의신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내용으로 영업지역 변경 완료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토즈 스터디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ar.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H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사는 2023년말 해당 영업표지의 가맹점 외에 매출액이 파악이 되지 않아 가맹점 매출액만 기재

합니다. 파악가능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추정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비중

연도	오프라인(가맹점만)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해당없음

[☞] 당사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구조 상 온라인으로 토즈스터디센터를 사용하지 않아 온라 인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및 종료

가. 가맹계약 기간

토즈 스터디센터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또한, 갱신 시에도 2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렌탈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나. 계약의 연장, 갱신, 종료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 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라.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450) (1)
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40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00) (17)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라.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7 조 2 항 각호
지키지 않은 경우	. — = 0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프로	
그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계약의 해지

가. 계약 해지, 종료 사유 및 그 절차 (일반 가맹계약의 경우)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3조 2 항~ 3 항	27조 각호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u>2</u> 2%~ 3 %	및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	4조3항	33조 1항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활동 시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	40구0청 0청	
거나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광고 및 판촉물을 임의 제작한 경우	13조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등 공급품 대금 및 기타대금의 약정한 납입 기일을 경	4 7 7	
과하는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18조	
경우	10年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9조1항~3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007	
경우	20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2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00구0권 4권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3조2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3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04구 0회	
이외로 사용할 경우	24조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	25 조	
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0 企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	28 조	
하지 않는 경우	20:1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29 조 2 항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1.2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29조6항	
경우	2910 8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0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31조1항~4항	
거부하는 경우	31118~48	
가맹점사업자가 멤버십 제도 운영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멤버	31조5항~6항	
십 비용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1335~05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	32조2항~5항	
하는 경우	02.1.2 o ~0 d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32 조 7 항	
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02±1 0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7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7조2	1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33조1 ^章	화 2 호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00321	J <u></u>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	
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33조
경우는 제외한다.	4항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각호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	
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33 조 3 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을 33 조 3 8 역조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3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 해지, 종료 사유 및 그 절차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 일반 가맹계약의 계약 해지 사유 외(일반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모두 적용됨)에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계약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당사와 별도로 체결한 "투자계약" 상의 이익분배의무 불이행 시	1항 3호	
당사가 "투자계약"에 따라 매월 렌탈 원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렌탈회사"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항 4호	33조
기타 가맹 계약의 내용을 "을"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1항 5호	

2)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약조문
당사가 매월 렌탈 원금 지급 등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2항 4호	33조

다. 기타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1) 일반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	양수인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 가맹본부 가맹계약 체결(양수도
맹계약 조건	계약 포함 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최초가맹금 중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

공동투자형 가맹계약의 경우, 일반 가맹계약의 양도 가능 조건 및 절차 외(일반 가맹계약 조건 모두 적용)에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양도조건이 있습니다.

- ① 당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지분도 대상자에게 양도하는지를 당사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37조 3항)
- ② 당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당사의 개설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37조 4항)
- ③ 양도양수 시점이 가맹점사업자가 "렌탈회사"와 체결한 "렌탈계약"기간 이후 "투자계약" 상의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이내일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양수 대상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당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37조 5 항)
- ④ 양도양수 시점이 가맹점사업자가 "렌탈회사"와 체결한 "렌탈계약"기간 이내일 경우, 양수인 등은 "을"이 "렌탈회사"와 체결한 렌탈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여아 합니다. (가맹계약서 37조 7항)
- ⑤ 당사가 당해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투자계약"상 계약 당시 당사의 지위는 투자계약 제 11 조에 따라 투자계약 당시 당사와 귀하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37조 제 11항)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독서실 운영업, 스터디카페 운영업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토즈 스터디센터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토즈 스터디센터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토즈 스터디센터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오전 09:00 ~ 익일02:00	월 1일 휴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10.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3	교 기 기 기 기	부담비율		H rl 자리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 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받은 날	
공동광고	상품광고 등	8포미의 30%	가맹점사업자수	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100%	-	_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000	달라짐	기획, 제작 비	용 이외는 협의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 및 브랜드파워 재고를 위한 업무제휴 등 통합 멤버십 제도 기획 및 운영 등을 총괄하며, 귀하는 당사가 통합 멤버십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합니다.

※ 통합 멤버십 제도에 따른 충당금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귀하는 그 일부를 부담하며, 구체적 분 담비율은 당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그 비율은 50% 이하로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 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위 사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2.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제 19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제 20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가맹계약서
금 일억원(₩10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의무를	제35조 제1항
위반하는 경우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제35조 제2항
금오백만원(\\S,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 33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본부"이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레이트코 레이늄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본부"에게 위약벌로	제35조 제3항
금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본부"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제35조 제4항
위약벌로 1일 금오십만원(\S00,000)씩 "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1057 -15-51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제5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제39조 제1항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6%)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는 당사에	제48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8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588-2955) - 홈페이지 문의 (www.tozstudy.kr)	-	
가맹 상담	- 1:1 개별 사업설명 및 상담	1 일	
상권조사 및 분석	- 가맹사업자 희망상권 조사 - 가맹본부 추천상권 제안	14 일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물건조사 및 점포계약	- 점포입지 분석 및 선정 - 가설계 및 수익성 검토 - 임대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진행	30~60 일 (최대 90 일)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W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실측 및 투자금 확정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에 따른 투자금 확정	1 일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평면도 및 입면도 설계/협의, 추가공사 협의	14 일	
중도금 지급	- 총 투자금액의 50% 중도금 지급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단, 매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차이 있음	5~6주	
중도금 지급	- 총 투자금액-(계약금+중도금) 지급	-	
오픈 마케팅	- 점포 신규 개설에 따른 홍보 실시	4 주	
채용 및 교육	- 종업원(매니저 및 파트타이머) 면접 및 채용 - 운영 및 서비스 교육 실시	4 주 (교육 4 일 포함)	
오픈 준비	- 집기 및 비품 세팅	2 일	
호 <u>ㅠ</u>	- 오픈식(선택사항)	D-day	

-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오픈 후 1~2주 내에 완료됩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 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인테리어 공사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경영개선방안 안내 진행		필요 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당사는 토즈 스터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 교육담당자의 판단 하에 교육대상의 습득력이 부족하여 개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나. 개점 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토즈 스터디센터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명	교육대상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보수교육 (재교육)	점주 또는 매니저	고객 서비스 및 세일즈	집체	3일	선택
특별교육	점주 또는 매니저	고객 서비스 및 세일즈	집체 또는 센터개별	1일	선택
양도양수교육	양도양수센터의 점주 또는 매니저	공간이해, 운영체계, 고객 서비스 및 세일즈(회원등록 등)	집체 또는 센터개별	1~2일 ※ 매니저 고용승계여부 에 따라 결정	필수
아미교육	동영상	고객응대, 센터관리	동영상	2일	필수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을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 포함) 비고		구분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 포함)	비고
----------------------------	--	----	---------	-----------------	----

가맹점 입문교육	10시간	3,300,000원	개점 전후 이수
보수교육(재교육)	2시간	실비	매니저 채용 후
특별교육	3시간	별도협의	가맹점 요청 시
양도양수센터 교육	3시간	3,300,000원	양도양수 계약 시 이수
동영상교육	2 시간	무료	상시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개점 전 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최대 6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점 후 교육의 경우, 가맹점 종업이 주된 대상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시	비고
1			해당없음	
2				
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2023년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별첨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별첨2.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

별첨3. 거래상대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서울특별사장